

# 포항공과대학교 직장발전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운영지침

제정 2020.10.01.

개정 2024. 4.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포항공과대학교 ‘직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직장발전협의회 구성 대상인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직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로자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협조)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된 해당 부서와 조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직장발전협의회 등은 선거에 관하여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직장발전협의회(이하 “직발협”이라 한다)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직발협 근로자위원 선출공고일 10일 전까지 근로자위원의 의결로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정 및 계획의 수립
2.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 게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및 결원보충)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선거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선거관리, 선거공고 및 비용

제11조(선거관리) ①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선거는 1일 내지 2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직발협 근로자위원 선출에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제12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직발협 운영관련 경비에서 지출하며, 필요한 경우 각 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대학 ‘직원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 중 선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는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단, 공정한 선거와 사용자위원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일부 직책 보임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된 직책은 그 이유와 함께 선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4.1.)

③ 선거권을 가진 자는 투표 시 본인이 소속된 선거구 내에서 1인 1투표권을 가진다. (개정: 2024.4.1.)

④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에 임할 수 없을 때라도 타인에게 선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피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직원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일부 직책 보임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된 직책은 그 이유와 함께 선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4.1.)

제16조(결격사유) ①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에 의하여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근속 1년 미만인 자
7.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인 자

## 제 5 장 선거구 및 입후보

제17조(선거구의 확정) ① 선거구는 대학 ‘직제규정’에 의한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직원 인적구성, 직원 수,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통해 확정한다.

1. 선거구 확정의 기준이 되는 직원 수는 선출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거구는 ‘직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위원 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구로 확정한다. (개정: 2024.4.1.)
3. 선거구를 확정할 때는 처 단위 행정조직 이하로 분할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대학 ‘직제규정’ 제2장의 기본 조직 상 “대학 및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 과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 는 처 단위와 동일한 하나의 조직 단위로 본다. 단, 선거구별 직원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선거구의 명칭 및 대상조직은 별표1과 같이 공고한다.

제18조(선출인원) ‘직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위원 수에 맞게 선출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 궐위한 위원이 속한 선거구에서만 해당 위원 수만큼 선출한다.

제19조(입후보자의 등록) ①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추천을 해당 선거구 내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후보 등록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및 추천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1부
2. 기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마감 다음날 17시까지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등록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선거구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로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타 선거구에 소속된 직원도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선거구에 입후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선거구 변경 등)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대학 ‘직제규정’에 의한 행정조직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선거구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입후보자 기호) 등록된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서에 의해 결정한다.

제23조(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 2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 6 장 선거운동

제24조(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직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27조(선거 홍보물의 게시)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격, 수량 등을 규정한 양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제28조(선거운동의 방법) 원칙적으로 게시판과 대자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입후보자들의 합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대학의 학사 및 연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한다.

제29조(금지사항) ①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선거운동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2.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대학구성원 등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4. 대학구성원 등 이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
5. 공고문·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기타 관리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선거운동 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 중의 조치를 취한 후 전체 직원에게 공지한다.

1. 경고

2. 시한부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 등록 취소

③ 전항의 조치 중 입후보 등록 취소는 규정위반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결의할 수 있다. 단, 경고 또는 시한부 선거운동의 금지 조치를 받은 입후보자가 재차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참작요건이 없는 이상 지체 없이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거나 제30조에 의거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무효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선거에 대하여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 7 장 선거인 명부

제31조(명부작성 및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일까지 대학에 재직 중인 자를 기준으로 선거구별로 직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3일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8 장 투표와 개표

제32조(투표 기간 및 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34조(투표 방식) ① 투표는 온라인 직접투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직접투표는 선거공고에서 지정한 가상공간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투표한다.

③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므로 보안사항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

④ 투표기간 중 전체투표율을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오프라인 직접투표)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직접투표를 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한다.

1. 오프라인 직접투표 시,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2.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며,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

시한다.

제36조(무효표) 오프라인 직접투표 시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능한 것

제37조(투표결과 보관)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공고 후 선거결과 DB 또는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인의 확정) ① 당선인은 선출 인원수에 한정하여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 간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우선 등록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입후보자가 1명 이하인 선거구에서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확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2일 이내에 이 결과를 직발협 근로자위원 전체에게 알리고 전체 직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9 장 이의신청

제39조(이의신청) ① 투·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개표를 중지시키고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 재선거 실시
2. 경고처분 : 당선 자체는 유효하며, 전체 직원 등에게 공시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선거 종료 후 이의신청은 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0 장 선거 사후처리

제40조(재선거) 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결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확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에 의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선거구에서 반대 득표수가 찬성 득표수 이상

일 때는 해당 선거구만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보궐선거) ① 직발협 근로자위원의 사퇴·퇴직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6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2조(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재선거 입후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3조(처리)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선거구의 명칭 및 대상조직 양식

선거구 명칭	대상조직	소속 인원
제1선거구		00명
제2선거구		00명
제3선거구		00명
제4선거구		00명
제5선거구		00명